

# “사찰재산권 보호 폭 넓어져”

## 자연공원법 개정 의의와 과제

17일 국회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중 일부를 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리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리 보수비 지급은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부부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문화재 관리보수비는 국립공원내 사찰과 공원 관리사무소 간의 협의에 의해 입장료 수입의 10%에서 30%까지 지원돼 왔었다. 그러나 30%를 지급받는 해인사와 법주사를 제외한 13개 사찰은 일률적으로 10%씩을 지급 받아 왔으며 쌍계사 내소사 대전사 도감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었다. 불교계는 13개 사찰이 지급받고 있는 10%도 기여도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일률적 지급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부담금의 귀속등’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제33조에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으로 보다 현실적인 지급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부처님께서 장로 난타와 향파는 가계에 가셨을때 난타에게 이르셨다. “지 향이란 주머니를 한 시간만 잡고 있다가 도로 놓아라. 난타는 분부대로 했다. “이제 내 손을 맡아 보아라.” “세존이시여 손의 향기가 끝없이 미묘하옵니다.” “그렇 것이다. 사람이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따르게 되면 그 덕에 감화되어 바른 도가 융성해지니라.”

부처님은 다시 길을 가시다가 생선 가게에 이르셨다. “난타야 이 가게에 들어가 썩은 생선위에 퍼놓은 갈대풀 한줌쯤을 잠시 쥐고 있다가 놓아라.”

난타가 시키는 대로 하자 다시 말씀하셨다. “손을 맡아 보아라. 어떤 냄새가 나느냐?” “오직 부정한 비린내가 날뿐입니다.”

“그렇 것이다.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이 생선을 덮은 풀 모양으로 잠간 사이에 악업이 물들어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다시 음미해보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물들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시간을 TV와 함께 보낸다. 뉴스도 보고 교양프로그램도 보겠다. TV를 보려면

램프 보겠다. TV에 중독되면 청소년들의 발달, 불륜·폭력도 넘실대는 드라마와 외화, 연예인들의 신변잡담에 몰려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은 곧 인생낭비일뿐 아니라 갈대풀이 비린내에 물드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부설 유아원은 TV안보기운동을 전개했다. 3~9일까지는 TV를 전혀 안보고, 10~16일에는 TV시청시간을 축소조정토록했다.

“최근후 자정이 넘도록 TV를 시청해왔는데 아이덕분에 TV보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이, 독서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이 길어지고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TV안보기운동”에 동참하여 시청시간을 줄인 한 학부모의 체험담이다. TV를 아예 안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하고 서로 살펴주고 이해하는 시간, 삶의 질을 높여줄 독서시간을 TV에 뺏겨서야 되겠는가. 좋은프로그램만 골라보는 원칙을 세우자. 불자들은 이왕이면 불교TV(btn)와 불교방송과 가까이 지내자. 향 주머니를 가까이하여 물에서 향내 나듯 생활이 향기로우길 바란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달여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즉 개정된 법에 따른 문화재 관리 보수비는 내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개정에 명시된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향후 주요과제로 남아있다.

이와관련 내부부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요구하는대로 법개정이 실현됐지만 기여도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크게 바뀔 것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측도 “큰 변동이 있는 입장료 수입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선이 다시 조정될 경우 정부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여도 조정에 따른 지원의 규모 변동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지원금의 범위를 전면조정할 해와할 것이며 이에따른 실무협의에서 문화재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종단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측은 법개정이 이뤄진 것과는 별개로 기존의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지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조계종은 개정된 법에 따른 전면 재조정외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조계종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학자 등 전문가를 통한 사찰문화재의 재평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여도의 재조정 기준을 문화재의 수

고계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폐지와는 의미가 상충되는 것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입장료의 폐지는 정부가 약속한 부분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법은 그때까지의 경과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정각회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발의함으로 국회에 상정됐으며 3월과 7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표류했었다. 그러나 10월 14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리료의 분리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과 정부가 합의한 3개항중 제2항에서 “공립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합의한데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량이나 가치(국보 코물등 지정현황)에만 두기 보다는 문화재를 포함하는 공인내 사찰의 정신적 역할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임연태 기자

## 문화재기여도 사찰-공단 이견 좁혀야 정부지원 불가피...입장료폐지 ‘변수’

이와관련 내부부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요구하는대로 법개정이 실현됐지만 기여도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크게 바뀔 것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측도 “큰 변동이 있는 입장료 수입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선이 다시 조정될 경우 정부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여도 조정에 따른 지원의 규모 변동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지원금의 범위를 전면조정할 해와할 것이며 이에따른 실무협의에서 문화재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종단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측은 법개정이 이뤄진 것과는 별개로 기존의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지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조계종은 개정된 법에 따른 전면 재조정외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조계종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학자 등 전문가를 통한 사찰문화재의 재평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여도의 재조정 기준을 문화재의 수

고계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폐지와는 의미가 상충되는 것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입장료의 폐지는 정부가 약속한 부분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법은 그때까지의 경과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정각회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발의함으로 국회에 상정됐으며 3월과 7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표류했었다. 그러나 10월 14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리료의 분리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과 정부가 합의한 3개항중 제2항에서 “공립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합의한데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량이나 가치(국보 코물등 지정현황)에만 두기 보다는 문화재를 포함하는 공인내 사찰의 정신적 역할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임연태 기자

## 조계종-선학원 관계 ‘악화일로’

### 대책반구성 재산환수등 강경책 “정관개정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무원은 8일 정기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일도양단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힌데 이어 13일 ‘선학원대책반’을 구성 법적대응등 종단 방침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선학원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운영에서 열린 이사회 및 전국 분원장회의에서 전국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에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선학원 분원장들 대다수의 의견이 ‘정관개정 불가’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종단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무원 대책반(반장 해창스님·총무부장)은 종헌 제9조3항과 4항과 제118회 중앙총회가 결의한 ‘선학원 임원 중징계 방침’에 따른 실무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학원 법인 설립시 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출산한 종단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선학원 소속 분원장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조계종 소속승려들에 대한 종단임정의 중징계 방침도 발의 계획이다. 이같은 조계종측의 움직임은 “더 이상 미온적으로 선학원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는 종단의 입장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밤에 열린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과의 마찰없이 화합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종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전국 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진로문제를 정하기로 하고 21일 분원장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불합한 분원장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하기로 했다.

21일 배포된 설문문의 내용은 ▲조계종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 할 것인가 ▲종단의 징계방침과 관련 임원스님들과 영보를 함께 할 것인가를 묻는 2개항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한 1백50여명의 분원장 스님들은 설문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자율적으로 포교하고 가람을 수호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임원직만 징계당할 수는 없으니 모든 분원장들이 함께 징계당하지” “재산보호와 도제교육의 두 요건을 다 충족하려면 문제의 해결은 없나 현명하게 판단하지” 등의 의견이 강도높게 제시됐다.

선학원 재단측은 이번 설문은 분원장들의 보다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분원장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불가’의 입장이 한층 견고히 확인되는 분위기였고 보면 다음 달로 예정된 선학원 이사회의 판단여부에 따라 ‘조계종 선학원 문제’는 종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전망이다.

조계종의 대책반 활동 여부와 선학원 분원장 설문에 따른 이사회의 진로문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교계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정관개정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종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전국 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진로문제를 정하기로 하고 21일 분원장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불합한 분원장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하기로 했다.

21일 배포된 설문문의 내용은 ▲조계종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 할 것인가 ▲종단의 징계방침과 관련 임원스님들과 영보를 함께 할 것인가를 묻는 2개항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한 1백50여명의 분원장 스님들은 설문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자율적으로 포교하고 가람을 수호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임원직만 징계당할 수는 없으니 모든 분원장들이 함께 징계당하지” “재산보호와 도제교육의 두 요건을 다 충족하려면 문제의 해결은 없나 현명하게 판단하지” 등의 의견이 강도높게 제시됐다.

선학원 재단측은 이번 설문은 분원장들의 보다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분원장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불가’의 입장이 한층 견고히 확인되는 분위기였고 보면 다음 달로 예정된 선학원 이사회의 판단여부에 따라 ‘조계종 선학원 문제’는 종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전망이다.

조계종의 대책반 활동 여부와 선학원 분원장 설문에 따른 이사회의 진로문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교계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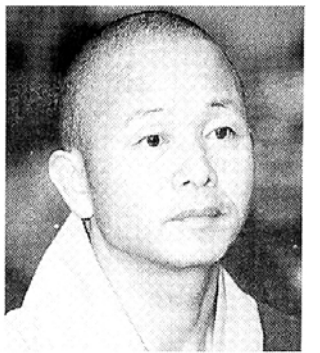
선학원

총무원

선학원

총무원

석림동문회(회장 혜승)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큰 일을 해냈다. 공복이후 한국불교의 종단, 포교, 교육, 문화 등 전분야의 50년사를 총정리한 자료집 《한국불교현대사》를 출간한 것. 회장 혜승스님을 만나 출간의 의의와 계획을 들었다.



-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석림동문회는 그간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33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동문들이 8백여명이나 됐습니다. 선방수행, 종단업무, 역경, 해외포교, 후

## 수요 인터뷰

### 창립 33년 ‘한국불교현대사’ 출간 석림동문회장 혜승 스님

## “불교현대사 정리는 미래준비”

배양성, 기림수호 등 전 분야에 흠뻑 젖어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오느 부산불교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승가의 친목모임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의 수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행에서 오는 부산불교의 전통도 모도 하고 출간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 이번 출간하신 《한국불교현대사》는 최초로 한국불교의 최근세를 총망라했다는데 교계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또 누구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2년전부터 자료수집, 자료연구, 분류, 정리까지 동문스님들과 교계연인들, 각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한 결실입니다.

물론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방대함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의 출간은 불교사적, 종단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한국불교 현대사를 정리한 책이 없던차에 하나의 교과서적인 위치를 점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거듭할 것입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 8백여 동문 전범 열심 “책발간은 수행 부산물”

- 석림동문회의 추후 활동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석림동문회 회원 각자가 수행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보다 내실있는 모임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동문회 차원에서 벗어나 종단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올 7월에 출간된 동문회원 50명의 글을 모은 《출가사원의 인연이 되어》라는 편에세이집이나 이번 《한국불교현대사》출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 석림동문회 회장으로서는 개인적 포부가 있으시다면.

▲석림동문회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야나 타단체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야에서 출세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승가로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제3회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붙여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 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공모 내용

- △ 주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 분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직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마감 12월15일

# 中央僧伽大學校 '9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 이래 7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91년 3월 각종 학교로 4년제 대학학위를 인정 받았고, '96년 12월 안양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서, '97년 11월 2개학과 증설인가, 군법사 선발전과 인가 등 제반구비 및 학풍이 정착되어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만으로 우선 선발함.  
\* 「고능시절」준비를 하여 「경학」을 하는 불민을 해소하고, 전통승가교육 비위험에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  
\* 재외국민, 외국인 승려 특별전형은 별도요강에 의해 시행 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 타종단 승려도 추천으로 응시, 총정원의 5% 내외로 입학 할 수 있음.  
· 전형방법: 학기 전형방법으로 입학정원 60% 범위 내외 선발 함.

계열구분	학 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비 고
		정원내(대교과출신)	정원외(재외국민출)	정원내(대교과출신)	정원외(재외국민출)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주간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주간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4개학과	72명	48명(40%)	2명		총계 122명

고교대신성적	교리 및 상식고사	면접고사	합 계
40%	40%	20%	100%
400점	400점	200점	1,000점

###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97. 12. 8.(월)~98. 1. 6.(금) 17:00 (단, 토요일은 제외)  
■ 접수기간: 97. 12. 29.(월)~97. 12. 31.(수) 14:00/98. 1. 5.(월)~1.6.(화) 17:00 (교육부 지정기간)  
\* 전화로 우편교부 신청하거나 접수기간내 우송접수 가능함.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내신성적표 (입학원서 중간 기록단)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입학원서 뒷면 기록단)  
\* 고졸 경력고시 합격자: 합격증 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은 대조 확인후 반환)  
2)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98년 졸업 예정자는 제외)  
3) 석차 인명부 사본1부 (이상은 출신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함)

### 《정시모집 '나'군》 신입학 시험

모집학과 및 정원 \*정원의 모집은 입학정원의 2%, 학교정원의 10% 이내에서 가능함

### 2·3학년 편입생 모집요강

1) 모집내용: 제2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각 ○○명  
제3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각○명

2) 지원자격  
· 제2학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2년이상 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전통대 졸업자, 방송대·산업대(개방대) 1학년 이상 수료자: 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가능)  
· 제3학년(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의 승남 3년 이상 승려

3) 전형방법과 일정은 신입학 요강과 유사함.  
\* 지원 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 바람.

학교법인 中央僧伽大學校  
승가학원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9(내 202~205) FAX : (02)928-4302